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
처리기간: 14일 (첫만남이용권, 장애인활동지원,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반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)

										I스는 30일)
성명		주민등록i	번호 번호)					전화번호		
- A		'	'					휴대전화		
								전자우편		
세대주와의 관계	성 명			동거여부			Z	직장명	전화번호	(집/직장)
※ 배우자 과	·계 ([] 변형	 류호 []	사신호 [1 사실사 0	 호)					
			<u> </u>	1			계좌번호	<u>-</u>	예금주	비고(사유)
- 근 ㅜ ㅁ ㅁ 한 급 계 좌 ¹⁾										
처				사회보	장급여	내용				
		지원대상자					신청구분	-		
			[] 어린이	집(3~5세)([]장애 []다문	화) [] 장애아 보육	육료(6~12세)	어린이집 방과후
[]보육	유료지원									어린이집 방과후
						-				
										어린이집 방과후
, _	— –					-				
		* 0, 1세 아동은	은 부모급여(보육	류) 자격으로,	어린이집(0~2	2세)로 신	청하면 됩니	다.		
		* 6513/11	전의 게되가 이				크^시갓게되(0	UA) II 11T3	3/18-301 1/12-33	다마도 진=시 기세
2				신청	성요건(1개	선택)				서비스시간
<u>i</u>	간병방문지원	[] 조손가?	덩 [] 한 [±]	무모가정(법정] 월 27시간
		. ,	사례관리 퇴원		[] H	병 벼 잔()	u [] &	·	L 시간자애	
<u> </u>		지원대상자		장애유형	3				-	
<u>!</u>	발달재활	장애정도								
<u> </u> 		필요서비스 (중복 체크가능)					지자우편 지장명 전화번호 (집/직장) 제좌번호 예금주 비고(사유) 신청구분 문화) [] 어린이집(0~2세) 연장 [] 어린이집 방과후 하) [] 장애아 보육료(6~12세)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) 문화) [] 어린이집(0~2세) 연장 [] 어린이집 방과후 하) [] 장애아 보육료(6~12세)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) 문화) [] 어린이집(0~2세) 연장 [] 어린이집 방과후 하) [] 장애아 보육료(6~12세)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) 위에 따라 어린이집(0~2세) 연장 [] 어린이집 방과후 하) [] 장애아 보육료(6~12세) 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) 위에 따라 어린이집(0~2세)기본모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청하면 됩니다. 게반치성질환자 [] 소년소녀가정 [] 월 24시간 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[] 월 27시간 다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[] 월 27시간 [] 월 40시간 대 [] 창과장애 [] 시각장애 [] 언어장애 [] 자폐성장애 [] 미등록 (영유아) 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[] 미등록 미술심리재활 [] 음악재활 [] 심리운동] 기타 ()] 시각장애 [] 안이장애 [] 지적장애 [] 가폐성장애 [] 민등록 [] 살리구함 [] 함동재활 감각발달재활 [] 운동발달재활 [] 심리운동			
	4	지원대상자								
	언어발달 지원	필요서비스 (중복 체크가능)	[] 언어발	달진단 [] 언어재	활 [] 기타 ()	
	(비장애이동)	장애유형 (봐 또 작却] 청각장애] [] 시각장	-OH []	언어장애 [] 지적장애
	HIELTINIOL	지원대상자		7	다녀와의	관계	[] 부 [] 모 []	기타()
[]	부모 상담 지원	장애 유형 및 정도	장애유형	[] 자회	폐성장애))				
발달장에인 지원	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	장애 유형 및 정도	장애유형	[] 지경 [] 자회	적장애 폐성장애		정도	로 [] 장0		
		지원유형	※ 확장형	이용시 장애		_				
	주소 세대주외의 ※ 배우자 관 인부계	주소 세대주외의 성명 ※ 배우자 관계 ([]법법 기원대상자와 한급계좌) ** 기가사가병방문지원 * 부모급여(보육료) 지원 포함 []가사가병방문지원 * 부모급여(보육료) 지원 포함 []가사가병방문지원 * 보험자항 보험자항 보험자항 기원	* 배우자 관계 ([] 법률혼 [] ** 배우자 관계 ([] 법률혼 [] ** 배우자 관계 ([] 법률혼 [] ** 대우자 관계 ([] 법률혼 [] ** 대우자 관계 ([] 법률혼 [] **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[] ** 이런이집(0-2 * 0, 1세 이동6 * 동일보장가구 [] 장애어동 기원대상자 원 [] 중에정도 [] 중이어정도 [] 중이어 등형 [부모또 폭기) 자원대상자 [중복 체크가능) 자원대상자 [중복 제크가능) [중복 제크라는) [중복 제크가능) [중복 제크라는) [중복 제크가능) [중복 제크가능) [중복 제크라는) [중복 제크는)	주소 세대주외의	주소 세대주와의	주소 세대주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건강(청에/ 경에/ 경에/ 경에/ 경에/ 경에/ 경에/ 경에/ 경에/ 경에/ 경	주소 세대주의	주소 세대주외의	중앙	생명

¹⁾ 부모급여(차액) 지급계좌로도 활용됩니다. 0,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(보육료) 자격 신청 시 부모급여(차액)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	[]피어지을 지비스	지원대상자			서비스명				
	[]지역사회 서비스	지원대상자			서비스명				
	 []여성청소년	지원대상자							
	생리용품 지원	지원대상자			지원신청	청소년본인 또는 부모, 주양육자 신청가능			
		지원대상자							
		긴급활동지원	[]해당 (※	신규신청자인 경	병우에만 신청	가능)			
			신청유형	[] 신규신청					
	[]	활동지원급여	변경신청 사유	[] 장애상태		[] 학교생활 			
	장애인활동지원		(※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	해당하는 [] 독거(1인)가구 (19세 이상) [] 거주지 이전					
			체크)		가족의 사회생 청 (19세 미민				
		특별지원급여			l일시부재([]	결혼 []사망 []출산 []입원 []지역사회보호자)			
		지원대상자	(* 4845	출생정보	[] 국외출성	숙색구위			
		지급방식	<u>ਫਰਨਾ</u> [] 복수국적 <u>ਫਰਨਾ</u> [] 둘째아 이상 [] 바우처(원칙) [] 현금(시설보호 아동 등) [] 현금(보호자명의 계좌)						
	[]첫만남이용권	1101	보호자(카드 보유						
		카드정보 (국민행복카드)	[] BC(은행) [] 삼성 [] 롯데 [] KB국민(은행) [] 신한 ※ 유의사항						
		(국민왕국가드)				원 은행사(BC, KB카드를 선택한 경우)를 선택합니다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.			
		지원대상자							
		지원 유형	[] 1급 유형	[] 2급 유형					
]전국민 마음	신청요건	기관에서 심리상담		정신건강복지센터 []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[] Wee센터/Wee클래스				
	투자 지원		필요성 인정	[] 동네의원 [] 정신의료		· 연계 시범사업 수행기관 ㅣ 기타 기관			
		(1개 선택)							
			그 외	중간 정	도 이상 우울	확인			
		지원대상자		출산(예정)	청년 및 보호역	건성아동 			
		1 1 1 1 1 1 1 1 1	[] 단태아([] 첫째아 [] 둘째아 [] 셋째아 이상),						
		지원 유형	[] 쌍생아 / 경	[] 쌍생아 /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+단태아([] 인력1명 [] 인력2명)					
보			[] 삼태아 /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+쌍생아([] 인력2명 [] 인력3명) [] 사태아 이상 /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+삼태아 이상([] 인력2명 [] 인력4명)						
건	[] 산모신생아		기본 지원대상 [] 자격확인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) [] 소득기준 이하						
	건강관리지원	신청요건	[]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[]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예외 지원 대상 []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[]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[] 새터민 신						
소			(해당자만)	[] 결혼이민	l 가정 []	미혼모 산모 []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			
		서비스		[] 문반 쉬	약시 산모 [] 기타(소득기준 완화 등)			
		제공 장소	[] 자택 [] 기타					
보건		지원대상자							
소・	┃ 」 저소득층기저귀	지원 유형 (중복 체크 가능,	기본지원대상			차상위 [] 한부모 [] 기타) 망・질병 []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[] 기타)			
주민	조제분유지원	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	예외지원대상	[]기저귀([<u> </u>	차상위 [] 한부모 [] 기타)			
센터			(지자체자체 사업) [] 조제분유([] 산모의 사	망・질병 []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[] 기타)			
개인	정보 수집 및 활용	동의				확인 (√ 체크)			
						(() 1 1			
	인정보 활용 목적 - 시체서로 제스해 보자 -	ᆲᄓ	L칭ㅂ자그ん이	이요. ᅰ고 미	ᄉᆜᅴᅱᆸ	구에 가치 버르 - 제7조 미 제			
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7조 및 제 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									
_	용 할 개인정보와 동의요 저시하 미 기조과게 하이		스트 . 게시 . =	그ㄹ느려 . 치어	사태에 자하	저법 사회법자구어의 스웨이			
력어	역사성 및 가득된게 확인 관한 정보, 그밖에 수	፲에 된한 정도, 급권자를 선정?	하기 위하여 필	_ 도등력 * 뒤급 요한 정보로서	주민등록전선	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 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			
융 •	(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,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,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,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), 금 [] 융·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								
교정 통히	¦ 등 자료 또는 정보에 [조회 및 적용하는 것 0	ᅫ하여 정기적⊆ 세 대하여 동의	∠로 관계기관에 합니다.	요정 하거나 곤	t련 정보통신	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			
3. 개	인정보 보유 및 파기								
	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 7 kol 결과하면 파기하음 7		원대상자 보호에	필요한 사회보장	상정보는 5년을	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, 그			

(3쪽 중 3쪽)

	(07 6 07/
유 의 사 항	확인 (√ 체크)
1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,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,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, 벌금,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.	[]
2.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,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,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	[]
3.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, 세대원, 소득·재산상태, 근로능력,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,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	[]
4.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	[]

- 1.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*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,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2.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- 3. 어린이집(0~2세)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(해당자에 한함)
- 4. 건강 진단서(해당자에 한함)
- 5.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(소견서),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,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
- 6. 첫만남이용권 지원신청 시 시설입소아동,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, 복수국적자, 난민 인정자, 보호자 여부 확인 이 필요할 경우 및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

추가제출 서류

- 7.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의 경우, 신청요건에 따라 아래의 서류
-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의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: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
-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의뢰된 경우 :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」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
-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: 정신건강의학과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
- 국가 정신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이 확인된 경우 :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(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)
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: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,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 보호확인서

본인(대리신청인 포함)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,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 신청인 2)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과의 관계 : (대리 신청의 경우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